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88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김소중
변론 종결 2020. 9. 24.
판결 선고 2020. 11. 1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50630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28,612원과 그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8,612원과 그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28,612원과 그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8,612원과 그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5면 5행까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B"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2행의 "B"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1행의 "Z(액면금 21,220,000원)"을 "Z(액면금 21,220,000원)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4행의 "2013다83992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12. 23.

선고2013다40063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면 8행의 "대부분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동산 매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경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어려운데{위 대법원 2013다40063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13다40063 판결 사안에 서는 수익자 갑이 매수한 제1부동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126,285,513원(매매대금의 약 90.2%)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사용되었고, 수익자 을이 매수한 제2부동산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 중 120,220,824원(매매대금의 약 90.4%)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J 주식회사에 대한 변제금액이 3억 7,100만 원이고 중도해지 수수료와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금 1억 5,900만 원의 대출기간이 60개월, 대출금 2억 1,200만 원의 대출기간이 276개월이고, 위 각 대출의 대출일이 2017. 10. 12., 대출종료일이 2018. 5. 14.이어서 실제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상당액수의 중도해지 수수료와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에서 지출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납부금액을 채무변제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매매대금의 약 89.3%{(J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금액 3억 7,100만 원 + 채권자 중 L 주식회사 관련 변제 금액 1,750만 원 및 450만

원+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103,775,000원 +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수 있는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3면 10행의 "변제 자력의 유지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었다가 매매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다시 바뀌었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절대적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이므로 3,000만 원 부분은 변제 자력 유지에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AO아파트 AP동

[도로명주소] 서울 도봉구 AQ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AR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 적: 99.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 도봉구 AN 대 46643.5㎡

2. 서울 도봉구 AS 대 49347.4㎡

대지권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5990.9분의 69.95 -끝-